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인구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 월 10 일

여 수 시 장 권 옥봉



여수시 조례 제1636호

붙임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인구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시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시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인구시책)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구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 및 연구
2. 인구유출 예방 및 인구유입 활성화
3. 인구교육 및 홍보
4. 인구시책 관련 민관 협력
5. 그 밖에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업·법인·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인구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한 시민에 대한 지원
2.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4조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사업계획) ① 시장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인구시책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세부 사항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직전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 성격·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지원범위 및 자격 세부기준
2. 지원내용 및 방법
3.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계획 내용 중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지원금 지급절차 진행 중에 지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제8조(포상) 시장은 인구시책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기업, 법인, 개인 및 공무원 등을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해 여수시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시책 사업 발굴 및 제안
2. 인구시책 추진계획 심의
3. 그 밖에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 및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인구시책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  
이 경우 가목의 사람은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가. 인구시책사업 관련 기관 업무 관계자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라. 인구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안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이나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 사업별 지원 기준 및 내용(제5조 관련)

지원분야	지원기준 및 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전입 인센티브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하여 6개월이 지난 시민	○ 10만원	최초 1회 지급
2. 전입 이사비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하여 1년이 지난 시민	○ 10만원	최초 1회 지급
3. 전입 장려금	○ 대학생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교 대학생  ○ 해양경찰교육원생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한 해양경찰교육원생	○ 50만원 이내   ○ 30만원 이내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전입 인센티브 및 전입 이사비 지원 불가
4. 전입유도 우수 기업·기관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시로 전입한 직원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	○ 전입유도 1인당 3만원 ○ 총액 300만원 이내	
5.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여주시 관내 전세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잔액 기준 15만원 이내	부부 한명 이상 거주 (부부 모두 시 거주)
<p>※ 지원금은 여수상품권(종이형·카드형·모바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 분야별 지원 자격, 지원 방법 및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